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48호 2018. 6. 5.(화)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67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3-164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8-68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18-6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708호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하도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 11

거창군 공고 제2018-709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

거창군 공고 제2018-720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2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8-67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3-164호선)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6월 07일

거 창 군 수

- 가.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 도면 : 게재생략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조서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164	6	국 지 도 로	483	거창동 변514 -3	동 변리 66-1	일 반 도 로	동 변 지 구	거고25 호 ('02.6. 10)	
변 경	소 로	3	164	6	국 지 도 로	480	거창동 변514 -3	동 변리 66-1	일 반 도 로	동 변 지 구	거고25 호 ('02.6.10)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 4	소로3-1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6m - 연장:483m→4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변경)

1) 동변지구(변경)

가)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7	동변지구	주 거	거창읍 동변리 72-1 일원	지구단위계 획에 의함	100,000	거고25호 (02. 6.10)	

나) 용도구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00,000	-	100,000	100.0	
주 거 용 지	89,180	-	89,180	89.2	
녹 지 용 지	10,820	-	10,820	10.8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164	6	국 지 도로	483	거창동 변514-3	동변리 66-1	일반 도로	동변 지구	거고25호 ('02.6.10)	
변 경	소 로	3	164	6	국 지 도로	480	거창동 변514-3	동변리 66-1	일반 도로	동변 지구	거고25호 ('02.6.10)	
기정	소로	3	165	6	국지 도로	64	거창동변 187-3	소3-164	일반 도로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4	소로3-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 변경 -폭원:6m 연장:483m→4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② 편의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 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2	공동회관	동변리 187-1 일원	533	-	533	주거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최고	최저
주거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60	150	4	-
녹지용지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40	100	4	-
편의시설	공동회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집회장 및 부속건물	60	150	4	-
공공시설	도로	-	-	-	-	-

거창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06. 07.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업 무설비	거창읍 대평리 1347 일원	94,523.9	-	94,523.9	거고43호 (2008.9.25)	

■ 유통업무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통업무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시설 간 면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온저장시설 및 기타, 선별포장 및 부속시설 면적 감소 [37,806㎡→0㎡(감 37,806㎡)] 선별포장·저온저장 및 부속시설 면적 증가 [0㎡→36,436㎡(증 36,436㎡)]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면적 증가 [1,708㎡→3,078(증1,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서북부경남 거점 APC 보완사업 선정되어, 세부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세부시설 면적 조정하여 유통업무시설의 효용을 높이고자 함

○ 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4,523.9	-	94,523.9	100.0	
유통 시설	소계		72,839.9	-	72,839.9	77.0	
	①	집배송센터	4,416	-	4,416	4.7	물류시설
	②	화공물자동차고차지	22,263.9	-	22,263.9	23.5	물류시설
	-	저온저장시설 및 기타	11,466	감) 11,466	-	-	물류시설
	-	선별포장 및 부속시설	26,340	감) 26,340	-	-	상류시설
	③	선별포장·저온저장 및 부속시설	-	증) 36,436	36,436	38.5	상·물류시설
	④	선별포장 및 부속시설	3,444	-	3,444	3.6	상류시설
	⑤	일반창고 및 기타	3,202	-	3,202	3.4	물류시설
	⑥	부대 및 편익시설	1,708	증) 1,370	3,078	3.3	상류시설
지원 시설	소계		1,910		1,910	2.0	
	⑦	주차장	1,910	-	1,910	2.0	
공공 시설	소계		19,774	-	19,774	21.0	
	-	도로	11,086	-	11,086	11.7	
	-	구거	241	-	241	0.3	
	-	녹지	7,537	-	7,537	8.0	
	⑧	오수처리시설	910	-	910	1.0	

2. 관계도면 : 게재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56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2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549	2009-04-01	2018-06-05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2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558	2009-04-01	2018-06-05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147-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598-1	2009-04-01	2018-06-05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2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11	2009-04-01	2018-06-05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56	2009-04-01	2018-06-05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여 분기 되는 첫번째 도로임을 반영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하도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하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31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 나. 위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기리 일원(가천천)
- 다. 사업내용: 하천정비 L=4.83km
- 라.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수자원정책과장)

2. 보상내용

- 가. 토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기리 일원(하도구간 편입필지)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8. 6. 1. ~ 2016. 6. 20.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3)
-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같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06 필지			98,560	98,560			70인	
1	가조면 기리	811	천	제방, 천 , 잡	952	952	982		이영섭	
2	가조면 기리	812	천	천	245	245	대초리		김병성	
3	가조면 기리	813	답	천	1,007	1,007	대구 중구 봉산동 234		김영호	
4	가조면 기리	815	천	천	592	592			이현복	
5	가조면 기리	816	천	천	417	417			김상필	
6	가조면 기리	817	천	천	747	747			강기문	
7	가조면 기리	819	천	천	195	195			김상필	
8	가조면 기리	821	천	천	489	489			이상술	
9	가조면 기리	822-1	답	천	447	447	1030		손팔석	
10	가조면 기리	850	천	천	733	733			김병희	
11	가조면 기리	850-1	천	제방	103	103			김병희	
12	가조면 기리	851	천	천	1,742	1,742			김진옥	
13	가조면 기리	856	천	천	1,025	1,025			이경술	
14	가조면 기리	925	천	천	403	403			이금술	
15	가조면 기리	926	천	천	595	595			이치용	
16	가조면 기리	927	천	천	615	615			오시준	
17	가조면 기리	932	천	천	245	245			이치용	
18	가조면 기리	930-1	천	제방, 천	377	3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77		이영득	
19	가조면 기리	933-11	임	천	126	126	982		이영섭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가조면 대초리	203	천	천	1,107	1,107		김수복		
21	가조면 기리	35-1	천	제방, 천	6,122	6,122	대초리	김시걸		
22	가조면 기리	36	천	천	1,633	1,633	대초리	김상필		
23	가조면 동례리	37	천	천	754	754	석강리	박종찬		
24	가조면 동례리	38	천	천	919	919	기리	문종업		
25	가조면 동례리	41	천	천	165	165	기리	박삼술		
26	가조면 동례리	42	천	천	142	142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김상오		
27	가조면 동례리	43	천	천	3,534	3,534	석강리	박종찬		
28	가조면 동례리	44	천	제방, 천	1,554	1,554	기리	박동기		
29	가조면 동례리	45	천	제방, 천	1,177	1,177	남하면 대야리	추경호		
30	가조면 동례리	46	천	천	2,083	2,083	기리	김문선		
31	가조면 동례리	48	천	천	1,273	1,273	기리	이병규		
32	가조면 동례리	51	천	천	770	770	기리	김병의		
33	가조면 동례리	52	천	천	3,501	3,501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902동 201호	박일범		
34	가조면 동례리	53	천	제방, 천	1,408	1,408	기리	최용환		
35	가조면 동례리	61	천	천	1,729	1,729		김기술		
36	가조면 동례리	66	천	천	598	598	기리	강기문		
37	가조면 동례리	67	천	천	932	932	기리	최성삼		
38	가조면 동례리	70	천	제방	509	509	기리	이만대		
39	가조면	328	천	제방, 천	530	530		김점운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례리									
40	가조면 동례리	330-1	천	천	63	63		어재은		
41	가조면 동례리	330-2	천	천	1,428	1,428		어재은		
42	가조면 동례리	330-3	천	천	179	179		어재은		
43	가조면 동례리	330-4	천	제방, 천	1,194	1,194		어재은		
44	가조면 동례리	331	천	천	1,038	1,038	웅양면 죽림리	이기수		
45	가조면 동례리	332-1	천	천	354	354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102동 405호	어윤준		
46	가조면 동례리	332-2	천	천	969	969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102동 405호	어윤준		
47	가조면 동례리	332-3	천	천	40	4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102동 405호	어윤준		
48	가조면 동례리	333	천	제방, 천	1,186	1,186		오명준		
49	가조면 동례리	334-1	천	천	169	169	동예리	이병선		
50	가조면 동례리	334-2	천	천	853	853	장기리 88	정용준		
51	가조면 동례리	334-3	천	천	179	179		이병선		
52	가조면 동례리	366	임	제방, 답	2,528	2,528	장기리 139	김일성		
53	가조면 동례리	388	잡	천	79	79		어용우		
54	가조면 동례리	389	천	천	516	516		이용개 이우철		
55	가조면 동례리	390-1	천	천	2,420	2,420	대구 상동	진희규		
56	가조면 동례리	390-2	천	제방, 천	535	535		진기조		
57	가조면 동례리	390-3	천	제방, 천	700	700	대구 상동	이판생		
58	가조면 동례리	390-4	천	제방, 천	1,715	1,715		어윤봉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9	가조면 동례리	391-1	천	천	1,035	1,035		진백형		
60	가조면 동례리	391-2	천	제방, 천	544	544		진백형		
61	가조면 동례리	395-1	천	제방, 천	635	635		신종화		
62	가조면 동례리	395-2	답	제방	97	97	432	이기영		
63	가조면 동례리	396-1	천	제방, 천	397	397		신종화		
64	가조면 동례리	397	전	천	334	334		신점출		
65	가조면 동례리	398	천	천	1,537	1,537	1103	신종말		
66	가조면 동례리	399	천	제방, 천	1,679	1,679	거창읍 중동	이덕재		
67	가조면 동례리	399-1	제	제방	10	10	거창읍 중동	이덕재		
68	가조면 동례리	400-1	천	천	879	879		이주화		
69	가조면 동례리	400-2	천	제방, 천	770	770		이주화		
70	가조면 동례리	401	천	제방, 천, 잡, 도로	913	913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71	가조면 동례리	401-3	천	제방	5	5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72	가조면 동례리	401-4	천	제방	28	28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73	가조면 동례리	403-1	천	제방, 잡	175	175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80	박인숙		
74	가조면 동례리	458-1	천	제방	54	54		이주화		
75	가조면 동례리	460	답	제방, 천	1,784	1,784	578	윤순희		
76	가조면 동례리	464-1	천	제방, 천	1,997	1,997	578	이영환		
77	가조면 동례리	465-1	천	제방, 천	126	126	대구부 상동 363	진희규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8	가조면 동례리	465-2	천	제방, 천	345	345	대구부 상동 363	진희규		
79	가조면 동례리	465-4	천	제방	181	181	578	민을식		
80	가조면 동례리	466	천	제방	57	57	578	민을식		
81	가조면 동례리	467	천	제방, 천	3,322	3,32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575-5	이교형		
82	가조면 동례리	467-1	천	제방, 천	1,155	1,155	577	이수룡		
83	가조면 동례리	467-2	천	천	63	63		이병운		
84	가조면 동례리	468	천	천	952	95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575-5	이교형		
85	가조면 동례리	469-1	천	제방, 천	804	804	577	이수룡		
86	가조면 동례리	469-2	답	제방	31	31	577	이수룡		
87	가조면 동례리	470-1	답	제방	66	66	577	이수룡		
88	가조면 동례리	471-1	천	천	605	605		오명준		
89	가조면 동례리	471-2	천	천	1,319	1,319		오명준		
90	가조면 동례리	471-3	천	제방, 천	578	578		오명준		
91	가조면 동례리	472-1	천	제방, 천	756	756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82	김기용		
92	가조면 동례리	478-1	천	제방	202	202	430	김용운		
93	가조면 동례리	479-1	천	제방, 천	206	206	586	민성식		
94	가조면 동례리	1360	천	천	1,017	1,017		어재은		
95	가조면 동례리	1361	천	천	1,377	1,377		이주화		
96	가조면 동례리	1365	답	제방	133	133	울산 남구 선암동 181-71	이종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7	가조면 동례리	1366	전	제방, 답	1,271	1,271	장기리 1394	김용숙		
98	가조면 동례리	1369	임	제 방, 천 , 답	3,514	3,514	장기리	이소개		
99	가조면 장기리	125-2	임	제 방, 천 , 답	5,606	5,606		김성엽		
100	가조면 장기리	126	천	제방	84	84	동례리 1334	어윤경		
101	가조면 장기리	166	천	제방, 천	499	499	203	서상기		
102	가조면 장기리	168-1	천	제방, 천	827	827	동례리	황일색		
103	가조면 장기리	168-2	천	제방	78	78	동례리	여봉석		
104	가조면 장기리	170	천	천	1,345	1,345		김계범		
105	가조면 장기리	171-1	천	천	182	182		김인준		
106	가조면 장기리	171-2	천	천	701	701		김인준		
107	가조면 장기리	172	천	천	645	645		박판암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 일부개정이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의 제한행위 세분화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법인’을 포함 (안 제2조)
-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관련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다. 군수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2)
- 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3)
- 마. 공무원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4)
- 바. 공무원 및 관련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의5)
-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6)
- 아. 알선·청탁 등 금지 규정의 행위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 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을 정함 (안 제13조의2)
-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시 세부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일부 변경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8. 6. 1. ~ 2018. 6. 2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055-940-3064
- 팩 스: 055-940-302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일자	2018. 6.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연이은 공직자 부패사건 발생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의 제한행위 세분화 등 변경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법인’을 포함 (안 제2조)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관련사항을 정함 (안 제5조)

(1)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를 규정

(2) 사적 이해관계인의 신고 및 조치사항 규정 구체적 명시

다.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2)

(1) 군수 임기 시작 시 임기 전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종류 규정

마. 공무원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4)

(1) 군수, 인사업무담당자, 산하기관 관리책임자가 거창군 또는 거창군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규정 신설

바. 공무원 및 관련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의5)

(1) 군수, 계약업무담당자, 산하기관 관리책임자가 거창군 또는 거창군 산하기관에 본인 또는 본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 신설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규정을 정함 (안 제5조의6)

(1) 공무원은 거창군 퇴직자(2년 이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향응을 함께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아. 알선·청탁 등 금지 규정의 행위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 (1)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행위의 기준 신설

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을 정함 (안 제13조의2)

- (1)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시 세부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 (1) 공무원과 공무원의 친족,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적, 사업적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일부 변경

- (1)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으로 제한하며 5만원으로 하한(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
- (2) 농수산물 선물 허용 금액을 10만원까지 상향
- (3)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 기준 변경(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6. 1. ~ 6.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분석결과반영 여부

※ 일부개정문안

거창군 조례(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제1호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 다음 각 항을 신설한다.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⑦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거창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거창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거창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군수는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거창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거창군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거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창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거창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의7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군수에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로 한다.

제11조1항 중 “공무원의”를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11조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를 “공직자에게”로 한다.

제11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전 차용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로 하고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의견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군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창군, 거창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창군, 거창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초과시간은 30분미만 불인정)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공무원 행동강령(규칙)</p> <p>제2조(정의) ----- 1. -----<u>단체</u>----- 가.-----<u>단체</u>----- 나.-----<u>단체</u>----- 다.-----<u>단체</u>----- 라.-----<u>단체</u>----- 마.-----<u>단체</u>----- 바.-----<u>단체</u>----- 사.-----<u>단체</u>----- 아.-----<u>단체</u>----- 자.-----<u>단체</u>----- 차.-----<u>단체</u>----- 카.-----<u>단체</u>----- 파.-----<u>단체</u>----- 하.-----<u>단체</u>-----</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u>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u> --,----- ----- 1. <u>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u>----- 2. <u>4촌</u> -----(<u>-----</u>말한다. 이하 같다)----- 3. <u>자신이</u> ----- <u>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u> ----- <신 설></p>	<p>공무원 행동강령(규칙)</p> <p>제2조(정의) ----- 1. -----<u>법인·단체</u>----- 가.-----<u>법인·단체</u>----- 나.-----<u>법인·단체</u>----- 다.-----<u>법인·단체</u>----- 라.-----<u>법인·단체</u>----- 마.-----<u>법인·단체</u>----- 바.-----<u>법인·단체</u>----- 사.-----<u>법인·단체</u>----- 아.-----<u>법인·단체</u>----- 자.-----<u>법인·단체</u>----- 차.-----<u>법인·단체</u>----- 카.-----<u>법인·단체</u>----- 파.-----<u>법인·단체</u>----- 하.-----<u>법인·단체</u>-----</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 ----- 1. <u>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u> --- 2. <u>공무원의 4촌</u>-----(<u>-----</u>말한다.)----- 3. <u>공무원 자신이</u> ----- <u>법인·단체가</u> ----- 4. <u>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u><신 설></u>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p>
<p>4.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p> <p>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인 경우</p> <p>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8.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9.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u><신 설></u>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p> <p>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p> <p>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p> <p>7.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p> <p><u><삭 제></u></p> <p>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9.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⑦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거창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거창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거창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거창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거창군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거창군, 거창군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거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창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거창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

제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군수에게-----.

제 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공무원의-----.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신 설>

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의7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 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②-----공직자에게-----.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 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
-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

	<p>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신 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신 설> ⑤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신 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 친족에게-----.</p>	<p>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p>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규칙 전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기획감사실)

- (제정) 2003.05.17 규칙 제 925호
- (일부개정) 2006.02.14 규칙 제 979호
- (일부개정) 2009.02.10 규칙 제1032호
- (일부개정) 2014.07.30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6.06.29 규칙 제1204호
- (일부개정) 2017.01.11 규칙 제1215호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14, 2009.2.10, 2016.6.29.)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6.29.)

- 1. “직무관련자”란 거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2.14, 2009.2.10)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개정 2006.2.14., 2009.2.10. 2016.6.29. 2017.1.11.)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바.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2016.6.29.)

사. 군으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2016.6.29.)

아.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2016.6.29.)

자.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타.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0)

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신설 2009.2.10)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전부개정 2009.2.10)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전부개정 2009.2.10)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전부개정 2009.2.10)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전부개정 2009.2.10)

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전부개정 2009.2.1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09.2.10. 2017.1.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포함)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2016.6.29.)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개정 2009.2.10.)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뚜렷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2.1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14)(전부개정 2009.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6.2.14, 2009.2.10)(단서 신설 2009.2.1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14, 2009.2.10)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제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6.2.14, 2009.2.10)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호신설 2016.6.29.)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인 경우(호신설 2016.6.29.)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호신설 2016.6.29.)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호신설 2016.6.29.)

8.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호신설 2016.6.29.)

9.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호이동 2016.6.29.)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6.2.14, 2009.2.10)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2.10)

제5조의2(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신설 2016.6.29.)

제 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제 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제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2009.2.1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2.10)

제 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신설 2016.6.29.)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전부개정 2009.2.10)

제 10 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9.2.10)

제 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6.2.14., 2009.2.10)

제 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해당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 2016.6.29.)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계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항신설 2016.6.29.)

1.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사업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3.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4.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

5. 도로시설계획
6. 관광개발계획
7. 농공단지지정 및 개발
8. 공유재산관리
9. 공유수면관리

10.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향이동 2016.6.29.)

제 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전부개정 2009.2.10.)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근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

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 전부개정 2017.1.11.)

제14조의2삭제(2017.1.11.)

제14조의3삭제(2017.1.11.)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7.1.11.)

제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6.2.14, 2009.2.10. 2017.1.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2.10.2017.1.1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조 전부개정 2017.1.11.)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 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2016.6.29. 2017.1.11.)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제 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개정 2009.2.10)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2.14, 2009.2.10.2016.6.29.)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3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2017.1.11.)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2.10)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9.2.10)

제 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14, 2009.2.10)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2조 (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2016.6.29.)

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2016.6.29.)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2.10.2016.6.29.)

제 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2. 14)(전부개정 2009.2.1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2.14, 2009.2.10.2016.6.29. 2017.1.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2.10.2016.6.2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2017.1.11.)

부 칙 (신설 2003.5.7)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2. 14 규칙 979호)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2.10,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04호 2016.6.29.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정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15호 일부개정 201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2015.12.29)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시행규칙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변경사항

- 1)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기술 조항 삭제(구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14조, 16조~17조, 19조~22조)

-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면적, 사용권의 소멸,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의 취소, 수거 및 개장명령, 사용자의 신고의무, 분묘의 관리, 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 2)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의 명료화 (제2조)
- 3) 주소지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이용가능시설과 무연고자 등 사용 규정 추가(제3조)
- 4) 관련법 개정예 따라 사용료·관리비 및 감면대상자 재규정 (제4조~제5조)
- 5) 상위법 개정예 맞춰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및 연장 사항 변경
 - 사용기간 (제6조)
- 6) 위탁운영사항 및 읍·면 위임사무 규정(제8조~9조)

다. 시행규칙 변경사항

- 1)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민원명 사용허가에서 사용신고로 변경(제2조)
- 2) 사용료 등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규정 추가(제3조)
- 3) 장사시설 이용시 실비부담과 사용원칙(4조~5조)
- 4) 분묘의 형태와 수탁자의 관리사항 규정 (6조~7조)
- 5)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조건 및 위탁조건 명시(제8조)
- 6) 안치 유골 반환 사항 규정(제9조)

4. 전부개정조례 · 시행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8. 6. 4. ~ 2018. 6. 26. / 20일 이상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2018. 6. 26.(화)까지
-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복지정책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3123, FAX: 055)940-308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8 ~
----------	--------

제출일자	2018. 6.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 이유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2015.12.29)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시행규칙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변경사항

- 1)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기술 조항 삭제(구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14조, 16조~17조, 19조~22조)
 -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면적, 사용권의 소멸,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권의 취소, 수거 및 개장명령, 사용자의 신고의무, 분묘의 관리, 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 2)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의 명료화(제2조)
- 3) 주소지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이용가능시설과 무연고자 등 사용 규정 추가(제3조)
- 4)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및 감면대상자 재규정 (제4조~제5조)

- 5)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및 연장 사항 변경(제6조)
- 6) 위탁운영사항 및 읍·면 위임사무 규정(제8조~9조)

다. 시행규칙 변경사항

- 1)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민원명 사용허가에서 사용신고로 변경 (제2조)
- 2) 사용료 등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규정 추가(제3조)
- 3) 장사시설 이용시 실비부담과 사용원칙(4조~5조)
- 4) 분묘의 형태와 수탁자의 관리사항 규정 (6조~7조)
- 5)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조건 및 위탁조건 명시(제8조)
- 6) 안치 유골 반환 사항 규정(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이하 “공설공원묘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공설공원묘지 내 봉안시설은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묘지(매장지)에는 사체를 안치해야 한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대상자) ① 공설공원묘지는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사망 시 거창읍에 주소를 둔 자는 별표 1의 거창공설공원묘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주소지가 각 면인 경우는 거창공설공원묘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무연고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행려자의 사체에 한정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 공설공원묘지의 선정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제4조(사용료·관리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묘(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별표 2의 사용료 중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 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군수가 정한 지역의 거주자
5. 공설일반묘지(공설공원묘지의 설치 전에 마을 단위에서 설치한 묘지로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자
6.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7. 무연고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 사망자의 사체

제6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및 연장) ①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고자는 해당분묘(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의 형태 등)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공설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설공원묘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운영위탁에 관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
2.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4. 유골반환 신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이 15년이 되어 추가로 15년 동안 그 공설공원묘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시 내야한다.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m ²)	장묘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 봉안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 봉안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 봉안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 봉안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 봉안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 자연장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 평장 / 봉안

[별표 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30년)		관리비(30년)		비 고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매장	1구당	600,000	1구당	400,000	
봉안묘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봉안당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평 장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자연장지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신청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4항 및 조례 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전액(다만, 조례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 번만 감면한다)
 2.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 50퍼센트
- ②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군수가 정한 지역”이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가 소재하는 법정리를 말한다.
-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수급자 증명서
 2.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

4.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담당자가 별표 1에 등록된 공설일반묘지의 위치를 확인
5.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 추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이나 봉안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매장 부대비용 : 상석·비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봉안 부대비용 : 봉안용기 구입비 및 봉안시설 설치비

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의 안치는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부(夫婦)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공원묘지 사용신청을 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결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신청자는 사용신고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로서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이거나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만 사용료등을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묘의 구조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봉분) : 가로 100cm, 세로 220cm, 높이 40cm
2. 비석 : 가로 25cm, 세로 60cm, 두께 12cm
3. 상석 : 가로 60cm, 세로 45cm, 두께 12cm

4. 비석의 표시 : 일련번호, 피매장자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묘의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를 수탁한 자는 분묘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벌초 및 사도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계약에는 위·수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유골반환 신청)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안치 유골을 반환해야 하며, 유골반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1]

공설일반묘지의 명칭과 위치

명칭	위치	면적(m ²)
합계	131필지	550,557
소계	10필지	33,680
거창개봉공설일반묘지	대동리 산 47 외 4필지	17,646
거창정장공설일반묘지	정장리 산 89	6,149
거창장팔공설일반묘지	장팔리 산19	5,752
거창학리공설일반묘지	학리 산 70	2,182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56	959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69	992
소계	14필지	42,850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37	6,545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3	873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127	4,638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251	4,403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87	2,182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118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46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12	3,769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63	2,083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84	1,488

명 칭	위 치	면적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136	225
주상거기공설일반묘지	거기리 산 7	4,760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08	5,537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41	1,785
소계	15필지	46,310
용양동호공설일반묘지	동호리 산 6	2,813
용양노현공설일반묘지	노현리 산 16	4,007
용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265	3,814
용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187	2,678
용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3	2,400
용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4	992
용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22	2,539
용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	5,795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43	1,752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75	4,469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23	2,704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41	4,046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15	1,868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39	3,769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43	2,664
소계	13필지	55,83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88	3,17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4	15,570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125	4,562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71	4,36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211	1,686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100	3,07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53	1,884

명 칭	위 치	면적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158	3,273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202	3,074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5	4,661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	2,479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198	5,950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51	2,083
소계	4필지	32,379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39	9,540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87	9,818
북상창선공설일반묘지	창선리 산 55	3,395
북상소정공설일반묘지	소정리 산 134	9,626
소계	8필지	41,920
위천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41	4,959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54	2,308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43	9,421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33	2,224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60	8,529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33	4,959
위천황산공설일반묘지	황산리 산 37	2,380
위천당산공설일반묘지	당산리 산 17	7,140
소계	2필지	5,242
마리고학공설일반묘지	고학리 산 32	3,695
마리말흘공설일반묘지	말흘리 산 84	1,547
소계	14필지	78,753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253	6,760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1	3,174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4	1,785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69	8,132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141	9,521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37	11,107
남상둔동공설일반묘지	둔동리 산 168	3,967

명칭	위치	면적
남상송변공설일반묘지	송변리 산 54	9,917
남상전척공설일반묘지	전척리 산 124	3,174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159	9,223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224-1	2,869
남상임불공설일반묘지	임불리 산 119	3,174
남상춘전공설일반묘지	춘전리 산 83	3,074
남상진목공설일반묘지	진목리 산 27	2,876
소계	11필지	56,765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66	5,296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36	9,322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93	9,917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140	3,835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83	2,290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174	3,038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20	5,355
남하양항공설일반묘지	양항리 214	3,269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53	4,311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201	6,750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2	3,382
소 계	8필지	42,398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249	4,615
신원구사공설일반묘지	구사리 산 75	9,276
신원덕산공설일반묘지	덕산리 산 190	1,587
신원청수공설일반묘지	청수리 산 117	12,893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65	2,579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149	3,084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38	2,704
신원과정공설일반묘지	과정리 산 38	5,660
소계	16필지	72,50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4	7,43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7	4,469

명칭	위치	면적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171	1,342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234	2,886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127	4,073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207-1	6,545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13	6,979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4	3,590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7	4,618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90	2,95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22	2,23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6	2,62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7	10,476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184	1,540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207	1,911
가조장기공설일반묘지	장기리 산 11	8,826
소 계	16필지	41,918
가북우혜공설일반묘지	우혜리 산 115	3,821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80	6,089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98	2,393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20	793
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31	2,436
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72	4,463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29	3,98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44	1,20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00	1,99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2	1,488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59	2,08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03	2,245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169	1,957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39	1,7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87	1,3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27	3,825

【별지 제1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장묘시설의 명칭	구분	묘지 및 봉안번호	비고
			일반묘지		
			봉안묘		
			봉안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 확인증

(앞쪽)

사 용 시 설	명 칭			
	구 분	일반묘지, 봉안묘, 봉안당		
	소재지			
	번호		규 모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		부터 까지		
사용조건		뒤쪽 기재		
<p>「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사 용 조 건

1. 앞쪽에 적힌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묘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 사용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공설묘지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묘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묘지에는 조례로 정한 형태 및 규격의 분묘 및 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분묘는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망자	성 명			최초 사용연월일			
	공설묘지 소재지			분묘(봉안) 연고자			
	사용시설 종류						
사용기간 연장횟수	1회	연장 기간	~ (년)		사용료		
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p>「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인)</p> <p>거창군수 귀하</p>							

제 호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최초 사용연월일	
	공설묘지 소재지			분묘(봉안) 연고자	
	사용시설 종류			사용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 (년)		사용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p>「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p>					

【별지 제4호서식】

○○공설공원묘지 위탁관리 계약서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함에 있어 위탁자인 “거창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창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제2조 “위탁을 받은 자”는 ○○공설공원묘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거창군 공설묘지조례」(이하“조례”라한다), 동 조례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설공원묘지의 모든 분묘 및 시설물은 “위탁을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거창군수”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분묘 및 시설물의 훼손은 “위탁을 받은 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 신고한 자에게 묘지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분묘 등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을 묘지사용신고 확인증에 따라 묘지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을 받은 자”는 묘지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묘지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거창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을 받은 자”는 묘지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거창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묘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위탁 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9조 “거창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성명: 거 창 균 수 (인)

위탁을 받은 자

주소:

생 년월일 :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유골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명 칭			
	구 분	공설묘지, 봉안묘, 봉안당		
	소재지			
	안치번호		규 모	기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안치일자				
사용기간				
유 골 반환사유				
사 용 자 와의관계		관계공무원확인		
<p>「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장묘시설에 안치된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p> <p>거창군수 귀하</p>				

[붙임 3]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 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16.1.29., 일부개정]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85호, 2017.12.12.,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18.1.16.] [법률 제15363호, 2018.1.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체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9.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41호, 2017.12.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거창군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보건소)

(제정) 2009.05.06 조례 제1925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